

폐기물관리법

01. 폐기물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I 폐기물 관련 법제의 연혁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법제는 2원화 - 1원화 - 세분화의 단계를 거쳐 왔다.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보전법’을 통하여 이원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의 제정은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였다. 그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차 축진을 위해 분법화되었고 법률체계는 세분화·전문화되었다.

1) 오물청소법 시대 (1961 - 1977)

1960 - 19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 시대이다.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소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

2) 환경보전법 시대(1978 - 1986)

1970년대 말에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농촌 폐비닐로 인하여 ‘합성수지 폐기물 관리 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는 처리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3)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 - 1992)

1986년 환경청은 폐기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폐기물관리법의 특징이었다. 1991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 일반폐기물은 지자체에 처리책임을 부과하였다. 종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분뇨 등은 1991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었다.

4) 분법화 시대(1993 - 현재)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나누어 정비하였다. 또한 19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이행을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였다. 2005년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7년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II 폐기물 관련 법제 현황

폐기물관련 법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또한 기타 관련 법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표 1 참조)

[표1] 폐기물 관련 법제 현황

법률 명	특징	입법목적	제정 시기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관리의 일반법	폐기물 발생 억제 및 폐기물 적정 처리	'8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 개념 및 각종 재활용 관련 제도	폐기물 적정 처리 및 효율적 자원 이용	'9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관련 특별법	건설폐기물 적정 처리 및 재활용촉진	'0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바젤협약 이행법	유해폐기물 수출입 및 국내 경유 규제	'92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특정 제품 자원순환에 관한 특별법	납, 수은 등 유해물질 사용 억제 및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제조	'07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 설치 관련 특별법	폐기물처리시설 원활한 설치 및 주변지역 주민 복지 증진	'95

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폐기물 분야의 기본적인 법률로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재활용품, 1회용품 사용억제, 폐기물 부담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분리배출표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제조업자의 재활용 의무,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제품 구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단일 법률을 입법화 한 것으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 유도 및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화 등이 있다.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992년 12월에 공포되었으며 1994년 2월 바젤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바젤협약 사항이 국내에 발효되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총 4장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입허가 및 취소, 수출입이동서류의 작성, 국내경유 동의, 수출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수출입금지, 폐기물 반출입 명령, 대집행 등 폐기물 수출입 등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 제품의 재활용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재활용정보 제공의무부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부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 등이 있다.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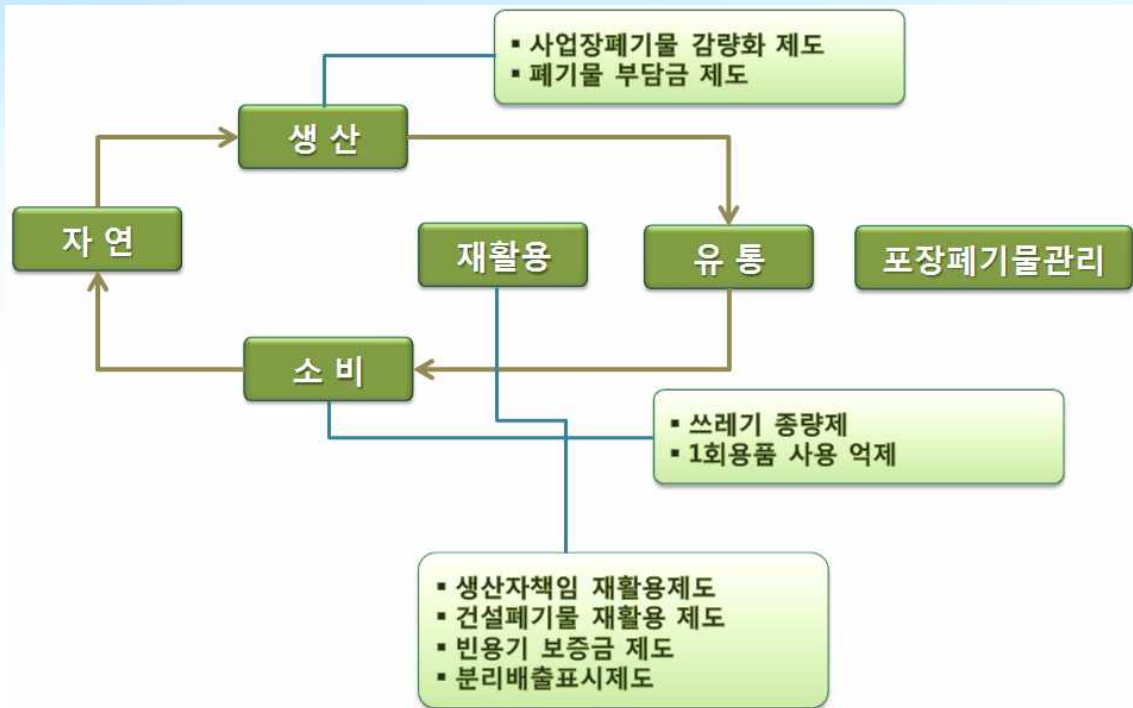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III 폐기물관리정책

폐기물 관리정책은 크게 폐기물 최소화와 폐기물 자원화의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다. 우선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량화 정책으로는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폐기물 부담금제도, 쓰레기종량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제도,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건설폐기물재활용제도, 빈 용기 보증금제도, 분



리배출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폐기물관리 정책현황

1. 폐기물 감량화 정책

①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제도

■ 개요

사업장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의 폐기물감량 추진실적/계획 등을 분석·평가하여 폐기물감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지도와 각종 감량기법 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와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 법률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등'
- 환경부 고시 제2012-160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1호(2012.8.16)

■ 적용대상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섬유제품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및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연간 1,0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② 폐기물부담금제도

■ 개요

특정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그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재활용사업,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 부과대상품목(6개 품목 9종의 제품)

- 살충제, 유독물제품을 담은 용기
- 부동산
- 껌
- 1회용 기저귀
- 담배
- 플라스틱 제품 등 8개 제품군

③ 쓰레기종량제

■ 개요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의의

-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에서 1995년 1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자발적으로 분리배출하게 되었다.
- 1인당 쓰레기량이 1994년에는 1.33kg에서 2000년 0.98kg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1995-2000년 동안 총 3,772만 톤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1,346만 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로 총 5조 2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편익을 창출했다.

④ 일회용품사용 규제제도

■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에서 일회용품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 규제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 상 규제대상이 되는 일회용품은 아래와 같은 제품이다.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접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⑤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 개요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이다. 생활소득 수준 향상으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양적·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있다.

■ 추진경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은 1993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등을 실시하였다. 1995년 8월에는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를 위한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을 고시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합성수지 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을 고시하여 운영해 왔다.

1999년 2월에는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포장검사명령제’와 포장공간비율·재질·횡수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포장표시 권장제’를 도입하였다. 2002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라 2003년 4월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포장재의 중금속 함유량 제한을 권장하는 포장재중금속제한 권장제를 도입하였다.

2. 폐기물 자원화 정책

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개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 재활용의무 대상제품 및 포장재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제품과 포장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해 정의된다.

- 포장재에는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류, 고무장갑 제품류 등의 포장재, 부동액 브레이크액 및 윤활유, 전기기기류 등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1회용 봉투·쇼핑백이 포함된다. 제품에는 전지류, 타이어,



유탄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전자제품이 포함된다.

■ 의의

-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Reduction, Reuse, Recycling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도모한다.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제도

■ 관련 법령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3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주요 조문

- 해당 법 제6조에서는 배출자의 의무로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해당 법 제8조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조문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③ 빈 용기 보증금 제도

■ 개요

-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 빈 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한다.

■ 대상품목

- 주세법 제4조 제2호의 발효주류 및 동법 제4조 제3호의 증류주류 등의 주류와 청량음료류 등 2개 제품군.

④ 분리배출표시제도

■ 개요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에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재활용 여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이다

■ 표시대상제품

<의무표시품목>

- 음료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유탄유,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품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등이 포함된다.

<지정표시 품목>

-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품·포장재

